

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2가단51516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모아라, 이재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건우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69,345원 및 그중 258,441,100원에 대하여는 2022. 3. 9.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6,235,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갑 제1호증의 3)

1)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2) 대출금액: 2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대출개시일: 2018. 1. 8., 대출기간 만료일: 2021. 1. 8.

4) 대출이자율: 내부기준금리 + 가산금리 2.42% (금리 변동주기 3개월)¹⁾ 5) 지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 더하여 결정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1%

연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4%²⁾ 6) 연대보증인: 피고

7)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제2조 제1항).

나. D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을 제13호증, 이하 'D조합 약관'이라 한다)¹⁾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D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제7조 제2항).

①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제1호)

②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제2호)

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D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D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 · 이자 · 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D조합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제7조 제5항).

3)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D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4항).

다.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갑 제6호증의 2)

1) 위탁자: C

2) 수탁자: 주식회사 E(2020. 1. 22.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F'이라 한다)

3) 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

4) 신탁부동산

순번	부동산	감정평가액	최저상환금액
1	인천 서구 G건물, H호 (이하 '이 사건 H호 부동산'이라 한다)	7억 3,000만 원	5억 6,200만 원
2	인천 서구 G건물, I호 (이하 '이 사건 I호 부동산'이라 한다)	9억 800만 원	6억 원
3	인천 서구 G건물, J호 (이하 '이 사건 J호 부동산'이라 한다)	4억 3,500만 원	3억 3,400만 원
4	인천 서구 G건물, K호 (이하 '이 사건 K호 부동산'이라 한다)	1억 3,600만 원	9,200만 원
5	인천 서구 G건물, L호 (이하 '이 사건 L호 부동산'이라 한다)	5억 1,400만 원	3억 8,600만 원
6	인천 서구 G건물, M호 (이하 '이 사건 M호 부동산'이라 한다)	5억 100만 원	3억 8,500만 원
7	인천 서구 G건물, N호 (이하 '이 사건 N호 부동산'이라 한다)	5억 800만 원	3억 9,100만 원
합계		37억 3,200만 원	27억 5,000만 원

라.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의 진행

1) C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 합계 643,906,690원을 체납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J호 부동산, 이 사건 M호 부동산, 이 사건 N호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였다.

2) F은 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돈 중 415,244,9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비용3)을 공제한 후 2022. 2. 18. 413,343,100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022. 2. 18.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36,246,920원,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9,570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3,096,790원이었다(갑 제3호증의 4).

마.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회수(갑 제3호증의 1)

1) 2019. 2. 27. 이 사건 K호 부동산을 174,308,76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9. 3. 21. 9,2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나머지 원금: 24억 800만 원).

2) 2019. 9. 30. 이 사건 I호 부동산을 6억 9,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9. 11. 12. 6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나머지 원금: 18억 800만 원).

3) 2020. 11. 18. 이 사건 H호 부동산을 654,195,840원에, 이 사건 L호 부동산을 528,521,376원에 각 매도하였고, 원고는 2020. 2. 14. 8억 7,75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나머지 원금: 9억 3,050만 원).

4) 이 사건 J호 부동산, 이 사건 M호 부동산, 이 사건 N호 부동산에 관한 공매 후 원고는 2022. 2. 18. 413,343,105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나머지 원금: 517,156,895원).

5) 원고는 위 라.항 기재 비용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지출한 인지대 212,3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74,700원을 공제하였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후 위 274,700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나머지 원금: 516,882,200원(= 517,156,900원 - 274,7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3, 4,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 10,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553,138,690원(= 이 사건 대출금 중 2022. 2. 18. 기준 나머지 대출금 원금 516,882,200원 + 2022. 2. 18.까지의 이자 36,246,920원 + 2022. 2. 18.까지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9,570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출금 원금 516,882,2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2022. 2. 18.까지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3,096,790원의 지급도 구하나,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여신거래약정서 제2조 제1항), D조합 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D조합 약관 제7조 제5항은 “채무자가 D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이자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1호증, 갑 제3, 9, 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18. 4. 8.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4. 9.부터 그 이자에 대하여 연체가산율(연 11%, 2018. 5. 1.부터 연 3%)을 적용하였고, C가 위 이자 지급일부터 14일간 지체하자 2018. 4.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18. 4. 23.부터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대하여 연체가산율을 적용하였으며, C가 2018. 4. 26.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자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C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 2018. 4. 23.부터 2018. 4. 25.까지, ㉡ 2018. 11. 22.부터 2018. 11. 27.까지, ㉢ 2019. 1. 22.부터 2019. 3. 20.까지, ㉣ 2019. 4. 22.부터 2019. 6. 6.까지, ㉤ 2019. 7. 22.부터 2019. 8. 1.까지, ㉥ 2019. 9. 23.부터 2019. 10. 20.까지, ㉦ 2019. 12. 23.부터 2019. 12.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연체가산율을 적용하였고, C가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유지한 사실, 원고는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22.부터 2022. 2. 17.까지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연체가산율을 적용하였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2022. 3. 2. 이 사건 대출금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D조합 약관 제7조 제2항 단서는 “이 경우 D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C에 이자 지급의무의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2019. 1. 11., 2019. 4. 25., 2019. 9. 25., 2021. 4. 26.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발송한 위 각 문서가 C가 이자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인지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위 각 문서가 C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위 ㉠, ㉡, ㉢, ㉤의 경우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C가 2021. 4.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나머지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합계 23,096,79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간은 2024. 1. 8.까지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C는 원고의 통지 없이 당연히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원고는 C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적용되는 D조합 약관 제7조 제2항 단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을 전제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인 원고의 통지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D조합 약관 제7조 제1항은 'D조합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D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임을 명백히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민법 제43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436조의 2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50% 감경하기로 한다(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감경하는 이상 피고의 면제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C는 2018. 1. 8.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후 이 사건 대출금 이자 지급을 7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가 부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대표이사로 약정서에 서명을 했던 피고가 아닌 C의 대표이사 O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연장 당시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C가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및 피고에게 2021. 4. 26., 2021. 5. 12., 2021. 7. 20., 2022. 1. 27. 기한이익상실, 독촉장, 최고장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없고, 2021. 4. 26., 2021. 5. 12., 2021. 7. 20. 발송한 각 통지는 C 본점으로 발송하여 피고가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3호증의 3을 제출하였으나 C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한 후 10개월 후 통지이다).

③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후 연체 또는 연장에 관하여 O과 협의하는 등 피고가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C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신탁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신탁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6,569,345원(= 553,138,690원 ÷ 2) 및 그중 258,441,100원(= 516,882,200원 ÷ 2)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2. 3. 9.부터 2024. 11. 28.(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 1) 원고는 연 4.32%라고 주장하였다(지급명령신청서).
- 2) 원고는 연 20%라고 주장하였다(지급명령신청서).
- 3) 원고는 비용으로 1,901,800원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415,244,900원에서 1,901,800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413,343,105원이 아니다.
-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원금 516,882,200원, 2022. 2. 18.까지의 이자 36,246,920원, 2022. 2. 18.까지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9,570원, 2022. 2. 18.까지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3,096,790원 합계 576,235,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